

「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3월 3일

나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춘남, 박세채
이정희, 정지원 의원(7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3월 4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3월 12일

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원 섭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(안 제1조~제3조)
-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
-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(안 제5조)
-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(안 제7조)
-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(안 제8조)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조, 제17조, 제25조
 -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7조
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6. 3. 4. ~ 3. 1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따라 녹색건축물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에서는,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을 구축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,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인책을 확보하였음.

- 안 제9조에서는, 녹색건축물 조성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 소통과 협의를 통한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

-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 의무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이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